

#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일시쉼터(이동형)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88
----------	------

2013년 7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6월 19일
-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3년 7월 1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 현재 38인승 버스 1대로 운영 중인 청소년일시쉼터로는 서울시 전역의 가출청소년 조기발견·보호가 어려워, 추가로 45인승 버스를 일시쉼터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무로
- 주요 위탁사무는 가출청소년 조기발견과 일시보호, 거리상담 실시, 위기개입상담과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등이며,
- 위탁기간은 2년 10월(2013. 9. 1 ~ 2016. 6.30)임.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청소년일시쉼터(이동형, 이하 “이동형 쉼터”라 함)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해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상기 이동형 쉼터는 가출·거리배회 청소년에 대하여 일시보호 및 거리 아웃리치(상담)를 통한 가출예방, 조기발견, 조기 개입 및 보호 등을 위하여 45인승 버스를 개조하여 청소년 밀집지역을 돌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현재 서울시에 시립 이동형 쉼터는 1개소가 운영 중이며, 상기 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시장이 상기 이동형 쉼터에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립 청소년쉼터(이동)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위기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의 조기구조·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계 보호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및 기타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등

####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

- 그런데, 상기 이동형 쉼터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이동형 쉼터의 관리·운영 및 가출 예방 거리 상담 활동, 가출 청소년의 조기 구조 및 연계 보호 활동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 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효율성 제고와 공급비용 절감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휴먼서비스의 경우 그 특성상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민간위탁의 일차적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임.
- 따라서 상기 이동형 쉼터에 위탁하려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전문성의 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이용자의 복지향상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뚜렷한지 여부가 핵심 요소라 할 것임.
- 상기 이동형 쉼터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가출 및 거리배회 등 위기 청소년에게 위기개입 상담에서부터 조기구조 및 관련 기관으로의 연계 보호활동에 이르기까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상기 이동형 컴퓨터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짐.
- 다만, 45인승 대형버스의 납품 예정일이 11월 초로 계약되어 있고, 납품 이후에도 차량 내부 구조 변경을 위한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동 조례안에서 제시한 이동컴퓨터의 개소 예정일자('12. 10.)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절차 이행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별첨자료] 시립 청소년컴퓨터 현황

연번	시설명	위치	보호유형	정원(명)		면적	운영인력	개소일	위탁기간	비고(운영단체)
				남	여					
계				50	40		37			
1	일시컴퓨터	용산구 서계동	일시	5	5	255	5	'07.12.21.	'13.01.01.~'14.12.31.	(재)서울시독교청년회 유지재단
2	이동컴퓨터	청소년 밀집지역	일시	5	5	대형버스	6	'04.03.31.	'13.01.01.~'14.12.31.	(재)서울시독교청년회 유지재단
3	드림센터 일시컴퓨터	강남구 삼성동	일시	10	10	859	5	'12.12.18.	'11.12.01.~'15.06.30.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4	금천컴퓨터	금천구 가산동	단기	-	20	536	8	'98.05.20.	'13.01.01.~'14.12.31.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5	신림컴퓨터	관악구 신림동	단기	20	-	455	10	'98.05.18.	'13.01.01.~'14.12.31.	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
6	신림중장기 컴퓨터	관악구 난곡동	중장기	10	-	151	3	'04.08.01.	'13.01.01.~'14.12.31.	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일시쉼터(이동형)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388
----------	------

제출년월일 : 2013년 6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호에 의하여 청소년일시쉼터(이동형)를 추가 설치 운영함에 있어,

나. 청소년사업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 양질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립청소년일시쉼터(이동쉼터)
- 소재지 : 미정
- 시설규모 : 45인승 대형버스(구매)
- 개소일자 : 2013. 10.(예정)
- 이용대상 : 가출 및 거리배회 청소년(정원 10명)
- 보호기간 :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년 9월(2013.09.01 ~ 2016.06.30)
- 위탁업무
  - 시립 청소년쉼터(이동)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의 조기구조·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계 보호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기타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등
- 소요예산 : 200,000천원(2013년)
  - 300,000천원 (2014년)
  - 330,000천원 (2015년)
  - ※ 2013년도 예산은 이동쉼터 설치비이고, 2014년이후 소요 예상 운영비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호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 민간위탁 추진현황<없음>

##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市 직영시 근무연한 등 동일조건인 인력이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분의 상당한 증가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사업비 부분의 상대적 감소로 서비스 질 하락이 예견되며,

-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경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